

자본거래 사후보고 확인서

1. 신청인 정보

신청인		주민(사업자)번호	
연락처		이메일 주소	
주소			

※ 원활한 사후관리 안내를 위해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외국환은행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2. 거래사유 확인

- 거주자의 미화 5천만불 이하 외화자금 차입(증권발행 포함) (규정 제7-14조, 제7-22조)
- 현지법인등의 외화자금 차입 (규정 제7-14조의2, 제7-18조)
- 현지법인에 대한 1년 미만의 금전대여 (규정 제7-16조)
-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(규정 제7-18조)
-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시설물 이용에 관한 권리 취득 (규정 제7-21조)
- 거자와 비거주자간 임대차 계약 (규정 제7-46조)
- 해외지사의 영업자금 또는 경비 (규정 제9-19조, 제9-20조, 제9-22조)

3. 사후보고 절차 안내사항

위 거래사유로 외국환거래를 하는 경우, 해당 거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관련 보고서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. 기일 내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해당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보고될 수 있으며,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외국환거래법 제32조, 시행령 제41조)

본인은 귀행과 외국환거래를 함에 있어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외국환거래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후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
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신청인 (서명/인)

